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18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18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2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대근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2. 6.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2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373,460원과 이에 대한 2020. 3. 4.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4,431,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①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 위 각 청구는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각 청구에 대한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 28.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C이 사내이사, C의 처 D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발행주식 중 45%는 C이, 5%는 D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9. 11. 21. C과 D가 원고의 이사와 감사 직에서 각 사임하였고, C과 D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주식은 D의 언니인 E와 그의 남편 F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E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D의 언니이자 E의 동생인데, 실제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음에도, 2008.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531,171,790원1)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급여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상세내역’과 같다)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G은행과 사이에 피고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30.부터 2014. 10. 31.까지 사용자부담금으로 총 63,960,03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4. 11. 20. 퇴직을 이유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63,960,030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 13, 14, 23, 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사내이사 C,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감사인 D는 피고와 통정하여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고에게 2008. 1.경부터 2014. 10.경까지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530,471,600원을, 퇴직연금 명목으로 63,960,0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행위의 원인인 근로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합계 594,431,630원(= 530,471,600원 + 63,960,03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07. 12. 28. 원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였고, 피고의 언니인 E은 주주로 참여하였는데, E과 그녀의 남편인 F이 원고의 실질적 사주였다. 당시 피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E은 피고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08. 1.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돈은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E 등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다.

또한, 피고는 E이 주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을 받았을 뿐, 어떠한 경위로 지급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의 지급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531,171,79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11. 20. 퇴직연금 명목으로 원고가 납부한 63,960,03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는 없었던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는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급여와 상여금, 퇴직연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거래은행인 G은행 안성지점에 의뢰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을 일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상여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의 경리담당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8. 1. 15. 피고에게 처음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는 피고의 I조합계좌로 해당 금원(6,564,85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거래은행인 G은행 안성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 상여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경리담당자는 피고를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갑 제7호증의 1(2008. 12. 급여 명세표)에는 피고의 직책이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급여에서 각종 세금(소득세와 주민세)과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매년 5회 또는 6회에 걸쳐 상여금 명목의 돈을 역시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서 공제한 소득세 등 합계

86,375,479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관할 세무관서에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는 피고의 은행계좌에 ‘급여’, ‘상여금’, ‘A급여’라고 기재됨으로써 각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상여금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09. 10. 30.에는 G은행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고, 2005. 3. 1. 원고에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이후 피고의 퇴직연금계좌로 매달 사용자부담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좌를 해지하여 당시까지 원고가 입금한 합계 63,960,03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신의 언니인 E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E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고, E의 주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송금한 급여 등 명목의 돈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595,131,820원(= 급여, 상여금 등 531,171,790원 + 퇴직연금 63,960,030원)은 원, 피고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급여 등 명목의 돈이 송금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5,131,8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94,431,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급여 등 명목의 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1. 15.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595,131,820원 중 그 지급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2. 24.2) 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합계 133,758,360원3) (= 별지 ‘급여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상세내역’ 순번 1 내지 31 기재 각 송금액의 합계액이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더라도,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133,758,360원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1.부터 2014. 9.까지 매월 계속해서 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에 지급받은 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등을 피고의 계좌에 각각 송금함으로써 각각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각 송금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1,373,460원(= 595,131,820원 - 133,758,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되는 금액(461,373,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강선아, 판사 신동주

별지

1) 원고는 그와 같이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합계액이 530,471,600원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27.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에 첨부된 ‘급여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상세내역’에서 그 내역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내역 중 순번 17, 19, 42, 43, 49, 68, 73, 89의 ‘이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실제 송금내역(갑 제9, 10호증)과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합계액도 “530,471,600원”이 아니라 “531,171,79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① 순번 17의 “3,552,740원”은 “3,553,740원”의, ② 순번 19의 “3,545,400원”은 “3,545,420원”의, ③ 순번 42의 “4,358,640원”은 “4,358,840원”의, ④ 순번 43의 “7,635,430원”은 “7,655,430원”의, ⑤ 순번 49의 “4,359,910원”은 “4,359,930원”의, ⑥ 순번 68의 “2,446,730원”은 “3,446,730원”의, ⑦ 순번 73의 “11,460,950원”은 “11,640,950원”의, ⑧ 순번 89의 “5,896,960원”은 “5,896,950원”의 각 오기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20. 2. 21.이므로 역산하여 10년 전인 2010. 2. 20.까지의 지급액 합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20. 2. 24.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각주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순번 17, 19 기재 각 이체금액이 정정되어야 하므로, 별지 ‘급여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상세내역’ 순번 15 내지 30 기재 각 이체금액 소계 또한 “60,518,580원”이 아니라 “60,218,580원”이 되어야 한다.